

노부모 특별공급 안내

“특별공급 신청은 인터넷 청약(한국부동산원 ‘청약Home’)을 원칙으로 합니다.”

●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체크리스트

1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

-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(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.)

2 1순위청약 요건 충족

-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, 지역별 예치금 충족, 무주택 세대주

3 공동인증서 발급 필수

- 청약접수일 이전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.

●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

구분	내용
배정세대수	A-4블록 33세대 / A-9 블록 17세대 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6조 : 공급세대수의 3% 이내
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(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)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(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.) • 청약자격 요건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아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 했을 것 ② 세대주일 것 ③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• 유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주택세대구성원(※피부양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도 무주택)으로서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, 피부양자(노부모) 및 그 배우자를 기준 으로 산정함. (「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 따라 피부양자(노부모)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) -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. -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(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)이 주택 또는 ‘분양권등’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(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제6호 미적용) - ‘ 소형·저가주택등’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.(※다른 유형의 특별공급도 동일 적용)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오산시 거주자(1년 이상)30%, 경기도 거주자(6개월 이상)20%,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6개월 미만)내 거주자50% 순으로 우선 공급함. 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,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. ※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‘청약가점 선정기준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별표1)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. ※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입력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. ※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.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전문 및 「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 등 관련 법령에 따름.

노부모 특별공급 안내

● 청약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

가점항목	가점상한	가점구분	점수	가점구분	점수	확인할 서류 등
① 무주택기간	32	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	0	8년 이상 ~ 9년 미만	1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무주택자에 한함 • 주민등록표등본(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) • 건물 등기사항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 등 • 신청자 및 배우자, 피부양 직계존속(배우자 포함)의 무주택 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만 인정 • 가족관계증명서 • 혼인관계증명서 (1)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(2)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
		1년 미만	2	9년 이상 ~ 10년 미만	20	
		1년 이상 ~ 2년 미만	4	10년 이상 ~ 11년 미만	22	
		2년 이상 ~ 3년 미만	6	11년 이상 ~ 12년 미만	24	
		3년 이상 ~ 4년 미만	8	12년 이상 ~ 13년 미만	26	
		4년 이상 ~ 5년 미만	10	13년 이상 ~ 14년 미만	28	
		5년 이상 ~ 6년 미만	12	14년 이상 ~ 15년 미만	30	
		6년 이상 ~ 7년 미만	14	15년 이상	32	
		7년 이상 ~ 8년 미만	16			
② 부양가족수	35	0명	5	4명	2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등록표등본 · 초본 • ※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• 가족관계증명서 • 출입국사실증명서(배우자 제외) • 만 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 인정 필요시 추가 확인서류 (1) 만 18세 이상 ~ 만 30세 미만 :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 (2) 만 30세 이상 :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초본
		1명	10	5명	30	
		2명	15	6명이상	35	
		3명	20			
③ 입주자 저축가입기간	17	6개월 미만	1	8년 이상 ~ 9년 미만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약통장(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.)
		6개월 이상 ~ 1년 미만	2	9년 이상 ~ 10년 미만	11	
		1년 이상 ~ 2년 미만	3	10년 이상 ~ 11년 미만	12	
		2년 이상 ~ 3년 미만	4	11년 이상 ~ 12년 미만	13	
		3년 이상 ~ 4년 미만	5	12년 이상 ~ 13년 미만	14	
		4년 이상 ~ 5년 미만	6	13년 이상 ~ 14년 미만	15	
		5년 이상 ~ 6년 미만	7	14년 이상 ~ 15년 미만	16	
		6년 이상 ~ 7년 미만	8	15년 이상	17	
		7년 이상 ~ 8년 미만	9			
총점	84	본인 청약가점 점수 = ① + ② + ③				

※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제6호에 따라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.(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)
 ※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.
 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, 추첨제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.